

의안번호	2219998
의 퇴 인	손솔의원
회 답 일	2026.8.28.
추계번호	26D3548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20조 (재심이유)	재심이유로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때를 추가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20조 (재심이유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(Individual Communications)¹⁾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(Views)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는 내용임
-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의 심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는 경우 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²⁾에 근거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

1) 개인이 국제인권조약상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해당 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 그 침해사실을 통보하여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

2) 제2조(보상 요건) ①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(再審)이나 비상상고(非常上告)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(未決拘禁)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

로 국가재정의 추가소요 발생

-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실제 재심 청구 건수, 그 중 무죄 선고 건수, 그리고 재심 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형사보상금의 규모는 당사자의 재심 청구 의사,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,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따라서, 개정안에 따른 장래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동 개정안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,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 판결(原判決)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「형사소송법」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(拘置)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.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assembly.go.kr